

시정요구서

수신인 : 경기도 오산시 발안로 1358, 1층(누읍동)

[60 계] 경기도오산누읍초평점 김상진 점주님

발신인 :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13, 2층~3층

[60 계] 가맹본부 (주)장스푸드

연락처 : Tel : 02-6011-7042(대표) / 02-6213-0196(법무팀) Fax : 02-6011-7055

제목 : 운영매뉴얼(경영지도_미션미수행)위반에 따른 시정 요구서

1.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당사는 귀하와 [60 계]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부상조하여 상호 믿음으로써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기본 목적으로 서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바 있습니다. 이에 당사는 정기적으로 각 가맹점의 운영매뉴얼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는바, 이는 가맹본부가 각 가맹점 운영의 지원 및 통제, 관리를 함으로써 [60 계] 브랜드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이를 통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위함입니다.
3. 그러나, 귀하는 2025. 02. 13. 본사의 조리 및 위생 점검 중 주방 청결 관리 등에 대한 시정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정해진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바, 이는 당사와의 가맹계약 제 8 조 제 6 항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지도 사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8 조 (가맹점사업자의 대한 교육·훈련,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)

⑥ “을”은 “갑”이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, 이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(“갑”의 직원에 대한 폭행, 욕설 등), 비협조적 태도(자료제출 거부 등)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, 적극적으로 참여/협조하여야 한다. “갑”은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한 가맹점 관리기준 및 경영지도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“을”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“을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“갑”의 시정요구를 따라야 한다. “을”이 경영지도를 요청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“을”의 부담으로 한다.

4. 또한, 귀하가 위반한 내용(제 8 조 제 6 항)을 시정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(제 8 조 제 6 항)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<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>제 15 조 제 7 호의 내용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5. 조속한 시정 및 재발 방지를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 위와 같은 경영지도사항 미준수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가 반복될 경우에는 전용유 지원 중단 등의 당사의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 부탁드립니다.

아울러 당사와의 원만한 관계유지와 동반성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. 이 건 시정요구서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당사 법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2025년 02월 26일

주식회사 장스푸드 (인)

